

[가상화폐분쟁]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몰수 여부: 1심 판결 부정 but

2심 몰수 인정 판결



가상화폐, 암호화폐의 법적성질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.

검찰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에서 이미 가상화폐,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몰수한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듯 보입니다.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1. 1심 몰수 불인정 판결

● 2017. 9. 8. 1심 선고(수원지법 제9단독)

※ 구형 : 징역 5년, 휴대폰 및 비트코인 몰수, 추징 1,469,832,000원

※ 선고 : 징역 1년 6월, 휴대폰 등 일부 몰수, 추징 340,000,000원

※ 비트코인의 경우, 「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 중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추징함이 상당하나, ②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므로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.」 고 판시하였음

2. 2018. 1. 30. 선고 항소심 판결 - 몰수 인정

3. 검찰의 몰수 노력 및 향후 계획

- 수원지검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**공판송무부장(부장검사 이은강)을 팀장으로 한 「비트코인 환수팀」을 구성**하는 한편, **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**하였음
- 수원지검 **비트코인 환수팀**은, **비트코인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및 판결, 사례 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상 몰수제도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트코인 몰수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·입증**하였고,
- **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, 자체적으로 고안해 낸 비트코인 추적기법을 활용하여 압수된 비트코인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임을 명확히 특정**하였음
- 이번 사례는 **수원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 할 수 있다는 리딩케이스(Leading Case)를 이끌어 낸 것으로,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입법목적**을 실현한 것임
- 수원지검은 상고심에서도 몰수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추징금 확보를 위해 일부 몰수 되지 아니한 비트코인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예정임

첨부: 비트코인 몰수 관련 검찰보도자료

기업법무, 기술법무, 벤처기업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